

##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Rights of Revoking Fraudulent in The Korean Tax

- Focusing on ways to improve the legislative theoretical -

최낙균\*

Choi, Nak-Kyoon

#### 목 차

- I. 서론
- II. 외국의 경우
- III. 현행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 절차의 문제점
- IV.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
- V. 국세 징수권자의 독립적 사해행위취소권
- VI. 결론

#### 국문초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세수이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sup>1)</sup>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래서 조세채권은 일반 사적채권<sup>2)</sup>과는 달리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징수기관이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권한<sup>3)</sup> 중 일부를 부

논문접수일 : 2014.03.21

심사완료일 : 2014.04.30

게재확정일 : 2014.05.13

\* 법학박사·동아대학교

1) 국세, 지방세, 기타 세수와 관련한 모든 법률 등

2) 개인 사익만을 위한 채권

3) 법원의 채무명의 없이 행정기관 자체권한으로 조세 채무자 명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추급권은 여전히 일반 사적 채권자들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세수확보의 실효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징수 법상 사해행위취소권과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정기관인 조세징수기관에 독립적 권한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헌법상의 위헌 소지와 기존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의 권한을 조세징수기관에 독립적 권한으로 인정함으로써 신속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여 세수 증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법리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검증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추급권, 사해행위취소권, 세수, 압류, 환가처분

## 1. 서론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이다. 그러면서도 조세 수입은 국가 재원 중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최대한 세원을 보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조세 채권은 일반 사인채권<sup>4)</sup>과는 다르게 조세징수기관에 각종 우선적 특권<sup>5)</sup>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채무자<sup>6)</sup>의 사해행위에 대한 추급권만은 기존 추급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함에도 이의 독립적 권한이 결여되어 있어 세수의 실효성 확보에 큰 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초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었던 압류, 환가처분권인 공매 권한까지 행정기관 자체의 독립적 권한으로 인정했으면서도 사해행위에 대한 추급권만은 여전히 사

4) 민사상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린다.

5) 압류 및 각종 부동산에 대한 환가 절차를 행정기관의 독립권한으로 신속하고 간략한 공매 등 간소한 절차를 거쳐 환가할 수 있는 절차

6) 채무자는 계약법상 대등한 당사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권적 채권 채무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임에도 근래에 와서 불대등한 공법관계에서 사용하는데 이를 조세 채납자를 지칭한다.

법적 권한으로 남겨 두고 있는 것은 모순 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조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sup>7)</sup>과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절차를 살펴보고 사해행위취소권을 조세징수기관인 행정기관 자체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인정했을 경우 헌법상의 위헌 소지가 있는지와 이미 다른 법률<sup>8)</sup>에서 이와 유사한 사법적 권한을 행정기관에 주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실효성을 분석 한 후 조세 징수기관이 일반적인 절차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 하는 경우 오랜 시간의 소요로 조세 징수기회를 놓치는 현행의 사법적 절차를 개선하여 조세 징수기관 자체의 독립적 권한으로 인정한다면 신속하게 채납자의 재산적 도피<sup>9)</sup>를 방지하여 실효성 있는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세징수기관인 행정기관<sup>10)</sup>에 법원 절차 없이 직접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도 헌법과 기존 타 법률에 위헌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이론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II. 외국의 경우

미국 국세청은 법원의 절차 없이 자체의 권한으로 납세자가 징수대상이 될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감소시킬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양도인의 납세의무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내국세법<sup>11)</sup> 또는 형평법에 따라 채납자로부터 재산을 양수 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절차 없이 조세징수기관이 직접 조세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국세법상 양수

7) 사해행위취소제도는 유래는 로마법의 Actio Pauliana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11)</sup> 이 법에서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을 인정하였고,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의 보호 수단을 통일하여 Actio Pauliana라는 소권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유래라 한다.

8)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3조, 제25조

9) 일반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장시간의 소요로 그 사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청구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승소를 해도 원상회복이 된다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을 경우 세수 확보는 실효성을 잃게 됨

10) 국세청장, 관세청장, 세무서장, 관세청장 등

11) 미국 내국세법 제6901(1)(IRC § 6901(1)) (여기서 IRC는 Internal Revenue Code의 약자로 미국 내국세법을 뜻한다.)

인의 납세의무 규정과 함께 각 주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사해 양도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한다.<sup>12)</sup> 양수가 연속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양수인의 납세의무는 납세자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최초 양수인뿐만 아니라 그 양수인의 양수인에게도 적용 되는데 이 경우 체납자가 지급불능 상태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미국은 납세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일반 채무에 대한 재산 은닉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징수권 확보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조세절차법에 조세 체납자인 납세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조세 징수관청은 체납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점차 조세 징수기관의 체납자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sup>13)</sup>

### Ⅲ. 현행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 절차의 문제점

#### 1. 서설

국세징수법에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sup>14)</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규정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은 1949년 국세징수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되었고, 그 후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가 1974. 12. 21.에 다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로 일부 자구 개정<sup>15)</sup>을 하였으며, 2002. 12. 26. 개정에서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이때까지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12) 변해정, “조세채권확보수단으로서의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조세의 법, 2010, 78면.

13)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세무사회, 2001, 198면.

14) 국세징수법 제30조

15)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로 개정하였다.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974. 12. 31.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문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36조에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채납자 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채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는데, 이를 2002. 12. 30. 개정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행사 방법에 대한 내용의 조문 자체를 삭제하였다.

## 2. 현행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한계

현행 국세징수법은 사해행위의 취소권 행사를 조세 채권자에도 일반 사인 채권자들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sup>16)</sup>하여야 하고,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에 의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채권자가 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의 대상 요건인 채무자의 소유권이 제3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환가 금액이 이전된 경우에 이 상태로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 대상에서 이탈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당초의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 복구한 후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러나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는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전득 자는 이익을 받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 자<sup>17)</sup>를 상대로 반환 등 원상 복구가 불가하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취소권 효력은 변제 불능의 채무자에게만 미치는데 이 경우 악의 제3자와의 소유권 이전으로 채무자가 얻은 환가 대금 등에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채납자가 환가대금을 이미 모두 또는 일부를 써버리고 변제능력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세 채납금 확보는 불가하거나 어렵게 된다. 이것이 현행 제도인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회수의 한계이다.

16) 민법 제406조

17) 당해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

### 3. 판례로 본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부터 최종 확정까지의 소요기간

다음의 통계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 집행권을 얻기 위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한 판례이다.

〈표 1〉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소제기부터 대법원까지 소요기간 현황표

연번	1. 사건번호(1심) 2. 선고일자:18)	1. 법원 명 및 사건번호(항소심) 2. 선고일자:	1. 사건번호(대법원) 2. 선고일자:	항소심~대법원 (소요기간)19)
1	1. 2.	1. 광주고등법원 2012나2599 2. 2012.11.14.	1. 2012다204013 2. 2014.2.13.	14개월24일
2	1. 2.	1. 서울고법 2011나64418 2. 2012.2.22	1. 2012다31963 2. 2013.11.28.	15개월23일
3	1. 2.	1. 서울고법 2010나53752 2. 2011.10.26	1. 2011다102059 2. 2013.10.31	24개월9일
4	1. 2.	1. 서울고법 2011나36840 2. 2012.1.18.	1. 2012다14449 2. 2013.10.31.	21개월19일
5	1. 2.	1. 인천지법 2011나13517 2. 2012.2.17.	1. 2012다29090 2. 2013.7.25.	17월3일
6	1. 2.	1. 서울중앙지법 2011나33183 2. 2011.11.24.	1. 2012다5643 2. 2013.7.18	19개월29일
7	1. 2.	1. 대전지법 2011나18565 2. 2012.3.15.	1. 2012다33976 2. 2013.6.13.	15개월3일
8	1. 2.	1. 서울북부지법 2010나8110 2. 2011.7.8.	1. 2011다75232 2. 2013.5.9.	21개월26일
9	1. 2.	1. 서울고법 2010나1410 2. 2011.3.24.	1. 2011다37001 2. 2013.4.26.	25개월7일

10	1. 2.	1. 서울고법 2009나13042 2. 2011.12.16.	1. 2012다211 2. 2013.4.11.	16개월
11	1. 2.	1. 대전고법 2012.11.14. 2. 2012나2031	1. 2012다107198 2. 2013.4.11.	17개월2일
12	1. 2.	1. 서울고법 2011나86135 2. 2011.11.28.	1. 2013다1105 2. 2013.4.11	18개월18일
		총일수 :	237개월13일	
		평균 :	18.5개월13.5일(약 19개월 14일)	

(자료출처 :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

위 표에 의하면 사해해위취소 사건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거칠 경우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평균 최소한 1년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위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심에서 항소심까지 최소 1년 이상으로 추산하여 산입하였을 경우 1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까지 평균 약 2년 7개월이 소요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발견하고 최초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2년 7개월이 소요된다는 가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된다면 조세 징수기관이 사 후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조세채납자로부터 채권 회수가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유는 장시간 소요되는 기간 동안 악의 조세 채납자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은 제3자가 선의 일 경우 회수가 불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 악의라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취득되기 때문에 채납자의 재산은 원상 복귀가 불가하게 된다.

- 18) 원심(1심)사건의 사건번호, 선고일자 확인은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생략 한다. 그러나 항소심까지의 종국판결 기간은 평균 1년으로 추산한다.
- 19) 소요기간 산출은 년은 365일로, 월은 30일로, 일수는 일로 산출하되 기산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았다.

#### 4. 소결

개인<sup>20)</sup>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채무명의<sup>21)</sup>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취소의 소송이 장시간 소요 되어도 채권자(조세채권자 포함)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률적인 절차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인 조세징수기관에서 별도의 사법적인 절차 없이 독립적으로 국세징수기관 자체의 권한으로 인정하여 채납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강제환가 하는 공매권한으로 연계된다면 세수 확보에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은 사법부의 권한인 압류 및 공매권한까지 행정기관에 인정하면서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서만 여전히 사법부(법원)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세 채권확보를 위해 주어진 조세징수기관의 특권인 압류, 공매권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IV.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

#### 1. 서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낭비, 감소, 은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자 등에게 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해 제3자와 통정<sup>22)</sup>하여 허위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로 제3자와 통정하지 않는 비진의 의사표시<sup>23)</sup>와 다르다. 예컨대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매매의 가장해위는 허위 표시이고, 증여의 가장 행위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도 매도인이 경영하

20) 자연인, 법인 등

21) 개인 재산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일방적으로 개인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즉 확정판결문, 결정문, 담보권 설정으로 교부 받은 집행증서, 등

22) 민법 제108조

23) 민법 제107조

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 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은 형식상 8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매매 계약상의 8천원이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유효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24)</sup> 이와 같이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의 요건이 내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실효성이 확보되는 권리이다.

## 2. 사해행위의 취소 요건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인 통정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시는 본래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양 당사자의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하며, 표시와 의사가 다른 것에 관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 하여야 하고, 합의는 목적이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가장매매로 추정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sup>25)</sup>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 준 훨씬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임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으로부터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받고, 또 타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장 매매로 본다고 판시<sup>26)</sup>하고 있다.

## 3. 사해행위의 효력

당사자 간 통모하여 표시한 의사 표시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sup>27)</sup> 따라서

2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25) 대법원, 1968. 11. 28. 선고, 68다4833 판결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 다266 판결.

2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641 판결.

각 당사자는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다.<sup>28)</sup> 통정행위에서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표시만을 이유로 불법원인급여를 한 때의 반환청구금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sup>29)</sup> 허위표시의 무효의 효력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하지 못한다.<sup>30)</sup>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즉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가장 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의 제3자에서 선의는 앞의 당사자 간 허위표시에 대하여 이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판례<sup>31)</sup>는 제3자에 대한 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에 대한 선의가 아님의 입증 책임은 주장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허위의 표시는 상대방 있는 행위에만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대방이 있는 이상 단독행위<sup>32)</sup>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상대방 있는 당사자 간에만 성립될 수 있다.

## V. 국제 징수권자의 독립적 사해행위취소권

### 1. 서설

국제징수법에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

27) 민법 제108조

28) 민법 제741조 이하

29) 민법 제746조

30) 민법 제108조 제2항

31) 대법원, 1971. 9. 29. 선고, 70다466 판결 : 대법원, 1978.12. 26. 선고, 77다907 판결

32) 채무면제 등

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sup>33)</sup>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한다. 이 규정은 청구권자만 국세징수기관장이라는 것일 뿐 그 절차는 모두 일반 사적 채권자의 민사상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다는 규정이다. 또 『세무서장은 채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채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sup>34)</sup> 라고 하여 국세징수기관장도 일반 사인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그러나 압류와 공매는 법원의 사법적인 절차 없이 국세징수기관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권한과 맥을 같이 하는 채권자취소만 사법부에 여전히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된 제도라 볼 수 있다. 당초 법원의 고유 권한이었던 압류, 공매 등의 권한도 행정부 소속 조세징수기관으로 하여금 행정기관 자체의 권한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인 채권자취소권 역시도 조세징수기관 자체의 독립적 권한으로 인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삼권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불복<sup>35)</sup>의 기회를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 3. 조세징수기관의 독립적 채권자취소 결정권

#### 가. 서설

현행 조세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징수기관장 자체의 권한으로 채납자의 사유재산을 일반강제 집행에서 요구되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채무명의<sup>36)</sup> 없이 직권으로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인 공매

33) 국세징수법 제30조

34) 국세징수법 제30조

35) 행정기관 결정을 1심으로 인정하고 사법부의 제1차적 불복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절차로 연결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환가처분한 후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sup>37)</sup>에는 채권자인 조세징수기관은 조세 체납자가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사인 채권자와 같은 법원을 통한 복잡한 절차와 최종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조세 체납자는 자신의 재산을 회피, 은닉할 시간적 기회가 될 수 있어 사 후 조세징수기관이 후에 승소를 해도 체납세수가 불가 할 수 있는 경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법원 절차 없이 조세 업무 소관기관<sup>38)</sup>인 조세징수기관 자체의 독립적 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

#### 나. 조세징수기관의 사해행위취소 결정기관

##### (1) 신청기관 및 결정기관

조세 체납자의 이전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신청기관은 관할 세무서장이 되고, 제1차적 심판기관은 지방국세청장이 되며, 제2차적 심판기관은 국세청장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의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sup>39)</sup>는 국세청장에게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할 수 있도록 사법적 절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sup>40)</sup> 행정기관에서의 불복 절차는 일종의 사법절차라 할 수

36)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권고이행명령, 지급명령 등

37)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을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동법 제4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38)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조세 소관 부서 등

39) 세무서장이거나 체납처분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0) 법원에서도 법관이 하지 않은 사법업무 담당자인 사법보좌관, 등기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법관 및 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법보좌관 관련법, 등

있지만 법원에서 하는 순수 사법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준사법적 절차라 한다. 이렇게 순수 행정기관에서 사법적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이론적 근거로는 권한 행사 자가 국가기관이고, 그 대상이 신속을 요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동일하면서도 빈번하기 때문이다.<sup>41)</sup> 물론 법률 해석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쟁이 나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시행되고 있는 법원에서 판사가 아니면서 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언론중재법상의 조정, 중재, 환경 분쟁에 관한 조정, 군사법원에서 행해지는 군사재판 등은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이 아니면서 판사가 아니면서 사법적인 업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법률해석 권한에 위반되지 않았거나 양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헌 아닌 합헌 및 적법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 역시 인정해도 위법,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불복 신청의 종류로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세청장에 항고하고 국세청장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세청장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을 하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sup>42)</sup>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국세청장의 결정문을 받고 항고 기간 내 항고하지 아니하거나, 국세청장의 결정문을 받고 불복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은 확정 되고, 확정되면 기속력과 확정력<sup>43)</sup>이 발생하도록 한다. 결정 방법은 지방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 내에 합의제 기관인 조세심판위원회를 두고 이 기관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sup>44)</sup> 조세심판위원회

기법, 공탁법에 규정)

- 41) 국세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일반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전문성과 대량 발생의 이유로 조세징수기관 자체의 불복기관인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위원회 또는 감사원장에게 하는 심사, 심판청구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 42) 심판을 한 지방국세청 소재 법원(국세청 소재가 아님 특별규정으로 정하면 됨)
- 43) 법원의 채무명의회와 같은 효력이 있어야 강제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44) 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 제6항

의 심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sup>45)</sup> 불복청구에 대하여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심리한 결과 그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고, 청구의 내용 자체에 대한 심리한 경우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한다. 기각 결정은 결정 유형 중 하나인데 결정기관이 청구의 내용자체를 심리하여 그 불복 청구가 이유 없어 내리는 결정이고, 인용결정은 결정기관이 청구의 내용 자체를 심리한 결과 그 불복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처분 등을 취소, 변경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조세징수기관<sup>46)</sup>의 결정은 확정<sup>47)</sup>되면 관계당사자<sup>48)</sup>를 기속한다. 따라서 당해 조세징수 기관도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sup>49)</sup>

## (2) 청구 요건

조세징수기관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 (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양도 할 당시 양도인은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에 있어야 하고,
- (나) 납세의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sup>50)</sup>을 양도하여야 하며,
- (다) 양도를 하면서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않거나,
- (라)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 (마) 양도 당시 납세의무 이행이 불능 상태이거나 사후 불능이 예상되어야 한다.<sup>51)</sup>

45) 국제징수법 제64조 제2항, 제6항, 제66 제6항, 제77조 제2항

46)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포함

47) 각 단계별 불복기간이 도과 된 경우.

48) 체납자, 신청 행정기관, 이해관계인 등

49) 국제징수법 제80조 제1항

50) 납세자의 재산인 이상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유일한 재산여부도 불문한다.

51) 미국처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의무는 없다.

### (3) 조세징수기관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재산적 범위

사해행위 재산의 취급 대상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형식적인 양수인 소유 재산이며, 양수 행위가 연속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양수인의 납세의무는 납세자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최초 양수인뿐만 아니라 최후 양수인<sup>52)</sup>에게까지 그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양수인은 악의로 추정되며, 선의일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도록 한다.

### (4) 조세징수기관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시기

조세채권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시기는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후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그 후부터는 언제든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느 특정시기에 행사해야 된다는 별도의 시기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즉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완료되는 때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sup>53)</sup> 단 이 규정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현행의 국세징수법에 『채납처분을 함에 있어서』<sup>54)</sup>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sup>55)</sup>과는 다른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 해석을 하여 보면 처분시기와 처분의 성질이 무엇인지 애매모호 하다. 따라서 사 후 논쟁에서 분쟁의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이 규정이라도 민법과 동일한 규정으로의 명백한 자구 개정을 해야 한다.

### (5) 조세징수기관의 사해행위취소 결정 방법 및 종류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 방법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 등 3가지로 한다. 각하 결정은 불복청구에 대하여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심리한 결과 그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청

52) 민법은 선의 제3자는 물론 연속적으로 이전된 제3자일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채권자 취소가 불가하다.

53)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알은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4) 국세징수법 제30조

55) 민법 제406조

구의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다. 기각결정은 결정기관이 청구의 내용자체를 심리하여 그 불복 청구가 이유 없어 내리는 결정이고, 인용결정은 결정기관이 청구의 내용자체를 심리한 결과 그 불복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신청 등을 취소, 변경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결정은 재판상 화해<sup>56)</sup>와 동일한 효력이나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조세심판위원회 결정 후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일정기간의 경과로 불복 기간이 완료되어 최종 확정 되면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증명원으로 양수인을 상대로 단독으로 소유권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이 조세채무자에게 원상 복구되면 기존의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세를 확보를 하면 된다.

### 3. 헌법 상 삼권분립 원칙<sup>57)</sup>에 위반여부

우리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 군사재판은 특별법원으로 규정하면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1조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일반법원을 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2조 내지 제109조에 법관과 재판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sup>58)</sup>에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으로 인한 특정 부분에 관한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 중재를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조정 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sup>59)</sup>이 중재결정은 재판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sup>60)</sup>이

56) 민법 제220조에 의하면 화해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57) 정부조직을 법률 제정하는 입법부,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 집행한 법률 해석 판단하는 사법부를 총칭하여 삼권이라 한다.

58)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

5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

60)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5조

있다고 규정하여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강제 집행력을 행정기관의 결정으로도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주고 있다. 또 헌법에서 사법부 고유 소관인 법령해석 권한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의 국방부 예하 군사재판소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군판사에게 독립적인 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불복의 최종 재판권 행사는 대법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sup>61)</sup>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법보좌관 제도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sup>62)</sup>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관이 아닌 일반 법원 직원인 사법보좌관<sup>63)</sup>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일부 법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법원의 사건이 지속적인 증가 등 법원의 업무증가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다함에도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법원의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되었다. 단 사법보좌관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 법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업무 범위도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절차 등 대체로 단순하면서도 경미한 업무로 한정한다. 그러나 법원의 사법보좌관 제도도 분명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님에도 법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편의 때문에 신설된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최종 불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과 법관에 의해 구조 받을 수 있는 최후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현행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sup>64)</sup>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 판결의 효력을 갖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중재 결정<sup>65)</sup>과 군사법원<sup>66)</sup>에서의 판결, 법

61) 헌법 제110조

62) 헌법 제101조 제1항

6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1항(사법 보좌관은 일종의 신설 관명으로 법관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법관 소관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닐 뿐이다.

64) 헌법 제27조 제1항

원에서 사법보좌관의 결정<sup>67)</sup> 등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빈번하고 특수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폭주 업무를 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특정 대상 업무들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이고, 그 집행기관 또한 법원과 같은 국가 기관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최종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판례와 학계의 통설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 VI. 결론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조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빼돌려 고의적으로 조세의무를 면탈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여 조세 채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국세징수법에서 국세채권 확보 수단으로서 압류, 공매 등의 법원의 고유 권한 중 일부를 행정기관인 조세징수기관 자체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해행위취소권한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세수확보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세 채권은 그 어느 채권보다도 국가기능을 운영하고 원활하게 하는 주된 공익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사익의 채권보다도 우선적인 각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조세 채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은닉, 회피되는 재산 처분의 중지하기 위한 신속한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익의 채권확보 방법인 민사상의 절차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빈번하고 지속적인 유사 사례문제의 폭주로 법원에서 일반사건으로 취급하기에는 법원 업무에도 큰 부담을 지우고 절차의

65) 법원에서 법관이 선고한 판결과 같은 효력인 기속력, 구속력, 확정력, 집행력이 발생한다.

66)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군사보통법원,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있고, 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일반 법원인 대법원에 최종 상고할 수 있다.

67) 법원에서 법관이 선고한 판결과 같은 효력인 기속력, 구속력, 확정력, 집행력이 발생한다.

복잡으로 인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 신속을 요하는 조세채납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의 중재·조정 결정, 군사법원의 군사재판, 법원 사법보좌관제도 모두가 업무의 특수성과 업무의 폭주 등으로 인해 신설된 제도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처분, 결정이 사법부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기관에도 독자적인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는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이 입증된다. 그래서 조세징수기관이 조세 채납자의 사해행위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법원의 일반 절차를 따를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연 소송절차로 인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배당되는 배분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집행이 지연되며, 또 제3자<sup>68)</sup>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상태에서 사법절차의 최종 결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인해 원상 복구가 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지방국세청장<sup>69)</sup>이나 국세청장<sup>70)</sup>에게 일반 사익 관련 사해행위취소 절차와 다른 조세징수기관 자체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조세징수기관에 독자적인 채권자취소권의 도입은 조세 채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탈세의 목적으로 은닉, 회피 하는 재산을 신속한 절차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세징수기관에 일반적인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절차와 다른 조세징수기관 자체의 독립적 사해행위취소결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제안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경태, 세법개론, 지혜의 샘, (2013)

68) 당사자 이외의 자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69) 제1차적 사해행위취소 결정권 행사기관

70) 위의 기관에서 불복할 경우 제2차적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재심기관

- 김상용, 민법총칙(2판), 화산미디어, (2013)  
김준호, 민법강의(제19판), 법문사, (2013)  
김지후, 민사집행법, 법학사, 2006  
김형배, 민법학강의(제12판), 신조사, (2013)  
김학성, 헌법(제5판), 박영사, (2011)  
김 훈, 채납처분과 강제집행 등의 경합, (2011)  
남윤봉, 한국재산법론, 동방문화사, (2013)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0)  
이준일, 헌법학강의(5판), 홍문사, (2013)  
이창희, 세법강의(재6판), 박영사, 2007  
이철재, 세법강의(개정증보판 제25판), 세경사, (2013)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1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정종섭, 헌법학원(8판), 박영사, (2013)  
정희철, 헌법(제7판), 여산, (2012)  
지원림, 민법강의(제10판), 홍문사, (2012)  
차강진, 헌법강의(12판), 청출어람, (2013)  
최용기, 헌법(3판), 대명출판사, (201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2. 논문

- 강인해, 국제징수법상 사해행위의 취소, qjua집 민건식 검사 정년기념, 박영사, 1991.  
김용대, 국제우선권의 위헌 여부, 세경사, 1995.  
김용우, 국제의 우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변혜정, 조세채권확보 수단으로서의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소고, 조세의 법, 2010.  
서기석, 채납처분과 강제집행 등과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론적 고

- 찰, 이태로회갑기념논문집, 1992.
- 조남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해행위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3권, 세경사, 1987.
- 조재철, 조세채권보전을 위한사해행위취소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 황진영, 조세민사소송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세무사회, 2001.

### 3. 외국문헌

IRC (Internal Revenue Code)§ 6901(1))

[Abstract]

## **A Study on Rights of Revoking Fraudulent in The Korean Tax** - Focusing on ways to improve the legislative theoretical -

Choi, Nak-Kyoon  
*JD. Dong-A University*

That form the basi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venue ensuring and tax law in order to ensure it provided a variety of methods and procedure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several leaving. Tax credit that takes a long time to take a general sign-bond complex civil procedure course, unlike the simple, such as short selling quickly and for many special privileges fore closures and real estate tax revenues for the procedure, the independent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 general hwang a brief procedures

are given through the process can hwan a. But fraudulent disposable's avoidance power is one of the objection privilege to support a right to force action a right to or lacks effectiveness in securing a significant draw back. Fore closures disposable environment, public auction authority until fraudulent disposable's avoidance power, while in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the conduct huge up grown on still leave the judiciary authority system is contradictory.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civil fraudulent acts's avoidance power and avoidance power 'tax fraudulent disposable's avoidance power,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s's avoidance power gave constitutional and whether existing laws might be unconstitutional does not violate fraudulent transfer so frights by administrative permission to jurisprudence that should be given to the agency to prove or theoretically.

**Key words** : rights to force, fraudulent disposable's avoidance power', revenue, seizure, ring